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엄 부 영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정책자료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엄 부 영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 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그리고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전개될 한·ASEAN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ASEAN 및 회원국들은 매우 상이한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국제협약 가입 현황 및 TRIPS 이행형태가 다양하며, FTA 체결 현황 및 성격도 체결국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ASEAN 자체로서 볼 때, 동일한 표준을 채택한다든지 지식재산권의 동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 위주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전에 비해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 열위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향후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열풍 강화, 그리고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한국상품의 수출증가와 함께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한·ASEAN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보았다. 우선 ASEAN 회원국들간의 제도적 차이점을 감안하여,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TRIPS 협정의 보호수위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기술경쟁력 열위로 인해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유인이 없는바, 무작정 규제,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협력분야를 발굴, 활성화함으로써 그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산업들을 선정해 양 지역간 민간차원의 조사를 실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정소송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 및 시장 정보(정보 제공 시스템 포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발사업부문에서 정보교환 및 경험공유, 공동연구 및 합작, 전문가 연수 및 교류 형태로 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공학,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공동제작을 강화하는 등 문화상품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표준의 조화 혹은 통일보다는 협력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TRIPS의 근본 취지인 불법복제품의 국제유통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1

 1. 연구범위 및 목적 11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13

제2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6

 1. 개요 16

 2. 개별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9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25

 가. 싱가포르·미국 FTA 25

 나. 싱가포르·일본 FTA 26

 다. 베트남·미국 FTA 27

제3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29

 1. 개요 29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29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29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31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32
가. EC·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32
나. ASEAN·WIPO 협력	33
제4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35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35
2. 기술경쟁력 비교	3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4
참고문헌	47
Executive Summary	48

표 차례

표 1-1. 기존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 형태 15

표 2-1. ASEAN 회원국들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 17

표 2-2. ASEAN 회원국들의 TRIPS 협정 이행 현황 18

표 2-3. 한국 및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분석 20

표 4-1. 한국 문화상품의 피해사례 37

표 4-2. 국별 최근연도 기술기준 산업별 생산액 비교 40

표 4-3. 국별 핵심역량의 비교(OECD 기준) 41

표 4-4. 지식재산권 출원 및 승인 현황 42

제1장 서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 한국과 ASEAN¹⁾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 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한 상태임.
 - 양측은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을 결정, 2004년 3월 이래로 총 5차례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음.
 - 이번 제7차 협상에서는 기본협정, 경제협력 부속서 및 상품협정문이 대부분 타결되었음. 그러나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
 - 한편 방송, 영화,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 되도록 합의되었음.

- 한·ASEAN FTA 협상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때, 지식재산권부문은 관세처럼 FTA 체결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은 아님.
 - 그러나 FTA의 본질적 목표가 상품무역 증대에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FTA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상쇄될 우려가 있음.
 - 박재복(2005, pp. 1~2)에 따르면, 2001~05년 9월 말 한국의 對일본 및 對중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이 저작권 보호가 강한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렇지 못한 중국에서는 감소추세가 불규칙하게 나타났음. 또한 방송콘텐츠 방송권 및 복제배포권의 가격추이 역시 저

1) ASEAN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원회원국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1984년 1월 브루나이, 1995년 7월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년 4월 캄보디아가 추가 가입함으로써 현 체제를 형성하였음.

작권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전자의 경우 크게 상승한 반면, 그렇지 못한 후자의 경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음.

-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수출품에 대한 불법복제 및 도용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를 협력 위주의 FTA 협상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제도 혹은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인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한편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양측 관심사항을 한·ASEAN FTA 공동연구회 및 전문가회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한국과 ASEAN은 지식재산 및 협력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상업화·실행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공인식프로그램을 위한 협력 구축의 실행 가능성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권부문에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양측은 특히 지식재산권의 창출 경험 및 활용에 관한 정보교환, PCT하에서의 국제연구 및 기초조사, 국제특허과정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인식 함양,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ASEAN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우선 다음 절에서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이 있는 후, 제2장에서 ASEAN 개별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타국들과 체결된 FTA를 비교·분석함. 제3장에서는 ASEAN 자체의 지식재산권 기본협정과 활동계획, 그리고 협력프로그램을 분석함. 제4장에서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ASEAN 회원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과의 기술경쟁력 차이의 관점에서 분석함. 끝으로 5장에서는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ASEAN FTA에의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 2005년 1월 현재 약 312개의 RTA가 WTO에 통보되었으나, 단지 170개만이 발효된 상태임. 향후 또 다른 65개의 R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WTO에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임.
 -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근 FTA는 전통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상품무역을 넘어 서비스, 투자,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및 개발협력 부문으로까지 체결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FTA가 지식재산권을 협정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는바, 이는 기술보호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 고조 및 고도기술 접근에 대한 개도국들의 필요성 증대가 주원인임.

- FTA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 유형으로 분류됨 (이 근 2003, pp. 200~201).
 - 첫째, 지식재산권의 완전 조화방식임. 이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을 채택토록 하는 가장 극단적 형태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EU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둘째, 높은 최소표준방식(high minimum standards)임. 이는 TRIPS를 초과하는 표준을 설정하나 지식재산권의 동조화를 추구하지는 않으며, NAFTA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셋째, TRIPS-plus방식임. 이 방식은 TRIPS 형성 이후 상당수의 FTA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조약에서 활용되고 있는 접근으로, TRIPS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기본으로 하되 TRIPS가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는 추가적으로 규정, 보호하고 있음. 이는 통상 TRIPS 표준을 채택하기로 약속한 국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EU와 중앙유럽 및 동유럽의 국가들,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국가들간 협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음.
 - 넷째, 상호 권고방식(mutual exhortation)임.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식적인 협상 없이 개별 국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에 대해 상호 권고하는 방식으로, APEC과 같은 낮은 차원의 통합에서 볼 수 있음.

- 한편 FTA는 협상 당사자들이 가지는 보호수준에 대한 전략이나 의도에 따라 크게 적극형, 보완형, 유보형 및 소극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적용해볼 수 있음(이 근 2003, p. 201; 윤미경 외 2004, pp. 8~9).
 - 적극형은 TRIPS 협정 수준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분야를 추가, TRIPS 협정 보다 강력한 조항을 포괄하는 방식임.
 -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칠레 FTA, FTAA 초안이 이 유형에 해당됨.
 - 보완형은 TRIPS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한 분야를 추가하는 TRIPS-plus 방식으로, 추가적 보호수준이 TRIPS 협정과 비교해 큰 차이는 나지 않는 형태임.
 - 한국·칠레 FTA, 싱가포르·호주 FTA, 싱가포르·EFTA, 그리고 멕시코·EC FTA가 이에 해당됨.
 - 소극형은 별도의 구체적 내용 없이 TRIPS 협정을 원용하는 FTA로, TRIPS 협정의 충실한 준수만을 요하는 형태임.
 - 캐나다·이스라엘 FTA, 싱가포르·뉴질랜드 FTA, 칠레·캐나다 FTA가 대표적인 예임.
 - 유보형은 구체적인 규정 없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과 절차상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식임.
 - 싱가포르·일본 FTA가 이에 해당됨.

표 1-1. 기존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 형태

지재권 조항 형태	선진국 FTA 체결국			
	미 국	일 본	E U	영연방
적극형	-미국·싱가포르 (2003) -미국·칠레 (2003) -FTAA 초안	-한국·일본 (일본 초안) -일본·멕시코 (2004. 8)		
보완형			-싱가포르·EFTA (2002) -멕시코·EC (2001)	-싱가포르·호주 (2000)
소극형				-캐나다·이스라엘 (1996) -싱가포르·뉴질 랜드(2000) -칠레·캐나다 (1996)
유보형		-싱가포르·일본 (2002)		

자료: 윤미경 외(2004), p. 9.

제 2 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 ASEAN 회원국들은 경제체제 및 발전단계가 상이한 만큼,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보호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먼저 ASEAN 회원국들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제외한 대다수는 WIPO 협약을 제외한 여타 국제조약에는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음(표 2-1 참고).
 - 국가별로는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및 태국의 국제조약 가입이 매우 저조함.
 - 지식재산권의 유형별로는 로마협약, 상표법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의 가입이 전무한 상황임.
- TRIPS 협정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은 TRIPS 협정의 대부분 조항을 이행하고 있음(표 2-2 참고). 참고로 미얀마와 베트남이 옵서버 지위에 있으며, 나머지 8개국들은 WTO 회원국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필리핀은 TRIPS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은 일부 조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항목별로는 지리적 표시, 경쟁저해 관행에 대한 통제,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분쟁 방지 및 해결에 관한 조항 이행이 미진함.²⁾

2) 대부분의 경우, 이 조항들을 법령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 및 처벌규정 등은 미흡한 상태임.

표 2-1. ASEAN 회원국들의 국제조약 가입 현황

	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 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WIPO 협약	x	x	x	x	x	x	x	x	x	x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x	x	x	x		x	x		x
로마협약							x			
문학 ·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x		x		x	x	x	x
상표법조약			x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x							
특허 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x	x		
특허 협력조약			x				x	x		x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x		x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x		

자료: ASEAN,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P Treaties* 정리; Available at: <http://www.aseansec.org/17438.pdf>

표 2-2. ASEAN 회원국들의 TRIPS 협정 이행 현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I. 일반조항 및 기본원칙	X	X	X	X	X	na	X	X	X	X
II. 지식재산권의 유효성·범위 및 이용에 관한 표준										
저작권	X	X	X		X	na	X	X	X	X
상표	X	X	X	X	X	na	X	X	X	X
지리적 표시	X				X	na	X	X		X
산업의장	X	X	X		X	na	X	X	X	X
특허	X	X	X		X	na	X	X	X	X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X		X		X	na	X	X	X	
비밀정보 보호	X		X		X	na	X	X	X	X
경쟁저해 관행에 대한 통제			X		X	na	X	X	X	X
III.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의무	X	X	X	X	X	na	X	X	X	X
민사·행정절차 및 구제	X	X	X	X	X	na	X	X	X	X
잠정조치	X	X	X		X	na	X	X	X	X
국경조치 관련 특별 요건	X	X	X	X	X	na	X	X		
형사절차	X	X	X		X	na	X	X	X	X
IV. 지식 재산권의 획득 및 유지	X				X	na	X	X	X	X
V. 분쟁방지 및 해결	X				X	na	X	X	X	X
VI. 경과조치(4)	X	X	X		X	na	X	X	X	X
VII. 제도적 협정, 최종 조항	X				X	na	X	X	X	X

주: na는 자료입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ASEAN, *The Implementation of Item 2.7.2(F) of the Hanoi Plan of Action Checklis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정리; Available at: http://www.aseansec.org/pdf/ip_doc2.pdf.

- FTA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ASEAN³⁾ 회원국들도 최근 들어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 회원국들 중 싱가포르가 FTA의 선두적 주자로 일본, 미국 및 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태국은 일본 혹은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 상태임.

2. 개별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 본 절에서는 ASEAN의 몇몇 회원국을 중심으로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유효성, 행정 및 집행제도를 비교·분석함(표 2-3 참고). 특히 이 국가들이 TRIPS 조항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기술함.
- 싱가포르는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는 국가로, 이는 2003년 5월 미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크게 향상되었음. 2005년 1월에는 저자의 저작권 보호를 20년 연장, 냄새 및 음성표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
 - 저작권 보호는 케이블 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상표는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함. 특히는 20년 만료 후 4년째부터 매해 갱신이 가능함.
 - 싱가포르는 강한 법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Composers and Authors Society of Singapore, Recording Industry

3) ASEAN은 FTA 체결에 있어 ASEAN 자체 및 개별 회원국 수준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는 평행적 방식(Parallel Approach)을 채택하고 있음. ASEAN 자체수준에서는 중국, 일본 및 한국과 FTA를 체결 혹은 추진 중이며,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등 기타 국가와는 협상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예정 중임. 그러나 ASEAN 자체로 추진 중인 FTA는 아직 지식재산권 부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2-3. 한국 및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분석

	한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및 유효성			
① 저작권	-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의 경우 15년간 보호	- 케이블 프로그램에 까지 보호 확대	
② 상표	-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③ 특허	- 실용신안은 15년간 유효	- 특허(20년) 만료 후 4년째부터 매해 갱신 가능	- 매해 갱신 가능 - 실용신안의 경우 5년간 갱신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행정 및 집행			
① 행정 및 집행기구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Patent Court, 대법원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Composers and Authors Society of Singapor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Singapore Mediation Centre	-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IPC), 법원
② 집행제도	-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특허, 미등록상표 및 디자인 침해시 민사 구제 가능 - 등록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 가능 - 등록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추가적으로 형사 구제 가능
3. 주요 국내법	Industrial Property Act, Design Act, Utility Model Act, Patent Act, Trademark Act, Copyright Act,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Act, Semiconductor Chip Layout Design Act,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ial Development Act	Copyright Act,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Patent Act, Registered Designs Act,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Trade Marks Act	Copyright Act, Patent Act,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Trademark Act,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Industrial Design Act, Trade Description Act

표 2-3. 계속

	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1. 주요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 및 유효성				
① 저작권	-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0년간 보호	- 사진작품·각색 및 편집물의 경우 첫 발간 후 25년간 보호	-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5년간 보호	- ‘도덕적 권리,’ ‘개인적 권리,’ 및 ‘경제적 권리’로 구분, 전자에 대해서는 무한 대로 보호
② 상표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③ 특허	- 발명품에 대해서는 20년,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는 10년 - 의약품, 음식, 음료 및 생명공학 발명품에 대해서는 특별보호	- 특허권 보유자의 이익이 R&D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 2년에 걸쳐 갱신 가능 - ‘small’ 또는 ‘simple’ 특허 (실용신안 포함) 의 경우 허가 후 10년간 보호됨.	- 발명품에 대한 특허 연장 불가 - 실용신안의 경우 7년간 유효, 그러나 연장은 불가	- 실용신안의 경우 10년 간 유효 - 의장의 경우 5년간 유효, 단 5년 단위로 2번 연속적으로 연장 가능
2. 지식재산권의 행정 및 집행				
① 행정 및 집행기구	- Intellectual Property Court	- Directorate-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of Commerce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RTCs (Regional Trial Courts)	-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NOIP), 법원, 관세청,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
② 집행제도	-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상표, 특허 등 일반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 가능 -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 가능	- 저작권 침해시 민사구제 가능 - 특허 및 상표권, 위조품 및 해적행위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구제 모두 가능	- 모조품의 제조 및 교역, 소비자기만 및 산업재산권 침해시 형사 구제 가능
3. 주요 국내법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Trade Secret Act, Trademark Act,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Patent Act,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Copyright Act	Laws on Copyrights, Marks, Patents,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Industrial Designs, Trade Secrets, the Protection of New Plan Varieties	Republic Act, Optical Media Law,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Protection of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 Commerce Act,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Civil Code, Government Decree 63, 76, 48, 12, 54, 06 28, 56, Circular 3055, 28, 61, 825, 27, 01, 30

자료: EIU, *Country Briefings*;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2004), *Legal Action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Asia*; WTO, *Trade Policy Review*.

Association, Singapore Mediation Centre가 지식재산권의 행정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2003년 6월 IP Taskforce가 설립되어 싱가포르·미국 FTA의 법제 개편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특허, 미등록상표 및 디자인 침해시 민사 구제가, 등록상표 및 저작권의 경우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말레이시아는 2000년 이후 6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이 통과되면서 입법 및 집행에서 상당한 향상이 이루어졌음. 2000년에는 특허보호기간이 20년으로 연장, 유명상표가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국제특허 보호 획득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이 감소되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집행이 강화되었음.

- 상표는 10년 단위로, 특허는 매해 갱신이 가능하며, 실용신안의 경우 5년간 갱신 가능함.
-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은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IPCM)에 의해, 집행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가 가능하며, 등록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추가적으로 형사 구제가 가능함.

□ 태국은 2002년과 2003년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등 입법 및 집행에서 큰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 실질적인 법 집행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편임. 2000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위반시보다 과중한 벌칙을 적용토록 했으며, 상표권 보호를 서비스·증명·단체표장 및 로고까지 확대함. 또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태국 경찰들이 미국 산업협회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저작권은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0년간 보호되며, 상표법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한편 특허는 발명품에 대해 20년, 제품디자인에 대해서는 10년간 보호되고 있으며, 의약품, 음식, 음료 및 생명공학발명품에 대해서는 특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식재산권 법 집행은 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태국에서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인도네시아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한 입법 및 실행 양 측면에서 부적절한 상태임. 한 예로 인도네시아는 2000년 1월까지 TRIPS 조항을 이행키로 약속하였으나, 2004년 말 현재 단지 그 일부만을 이행하였음.
- 저작권은 사진작품·각색 및 편집물의 경우 첫 발간 후 25년간 보호되고 있으며, 상표법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특허는 특허권 보유자의 이익이 R&D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 한번, 2년에 걸쳐 갱신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small’ 또는 ‘simple’ 특허(실용신안 포함)의 경우 허가(grant) 후 10년간 보호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행정은 Directorate-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법 집행은 Court of Commerce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 특허 등 일반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구제가,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필리핀은 1997년 Intellectual Property Code를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루었으며, 저작권, 특허 및 상표권의 보호를 확대하였음. 아울러 TRIPS하의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 설계 및 비밀 정보 보호 등이 법적으로 보호됨.
- 저작권은 응용예술작품의 경우 25년간 보호되며,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특허는 발명품에 대해서는 연장이 불가하고, 실용신안의 경우 7년간 유효하나 연장은 불가한 상태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정 및 구제는 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에서, 법 집행은 RTCs(Regional Tribunal Courts)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 구제가 가능하며, 특허 및 상표권, 위조품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함.
- 베트남은 1986년 무역 및 외국인투자 개방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1996년 Civil Code가 도입된 후 지금은 모든 지

적·산업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 저작권은 ‘도덕적 권리(moral right)’,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 및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덕적 권리는 무한대로 보호됨.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실용신안의 보호는 10년간, 의장보호는 5년간 유효하나 후자의 경우 단 5년 단위로 2번 연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함.
-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기관이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NOIP)에서, 집행은 NOIP, 관세청, 과학기술부, 문화정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모조품의 제조 및 교역, 소비자 기만 및 산업재산권 침해시 형사 구제가 가능함.

□ 비교차원에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년 TRIPS 협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식재산법들을 개정할 이래, 전자상거래 및 영업비밀 등 신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들을 갱신해오고 있음.

- 저작권은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의 경우 15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은 15년간 유효함.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및 집행이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Patent Court,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실용신안,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하며, 상표권의 경우 형사 구제를 위해 고발이 요구됨.

□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짧은 역사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위조 및 해적행위, 집행체제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이들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 본 장에서는 싱가포르·미국 FTA, 싱가포르·일본 FTA, 그리고 베트남·미국 FTA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조항을 분석함.

가. 싱가포르·미국 FTA

- 이 FTA는 앞서 설명한 FTA 지식재산권 부문 분류 중 적극형으로, TRIPS 협정에 포괄되지 않은 기존 협약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TRIPS-plus 국제조약으로는 위성송신배포협약, UPPV, WCR, WPPT, PCT, 상표법조약 등이며, 향후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협정으로는 헤이그협정과 마드리드의정서가 있음.
- 또한 기타 추가적인 조항을 상표, 저작권, 특허 등 권리형태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미국 FTA는 상표 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 TRIPS 협정과 달리 상표권에 대해 지리적 표시에 우선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보호할 수 있음.
 - 또한 TRIPS 협정에는 표기되지 않은 단체표장, 서비스표장, 냄새표장, 증명표장 등도 명시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CANN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는 등 도메인네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전자형태의 임시저장도 불법복사 대상에 포함됨.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TRIPS-plus 조항임.
 -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의 우회 또는 파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 나아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허의 경우 의약특허품 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 동안 타인에 의한 판매금지 및 판매허가 심의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까지)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보장하고 있음.
 - 또한 저자의 이름 등 권리를 표시하는 정보의 훼손 및 파기도 금지하며, 위성송신 암호의 해독을 위한 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확산을 범죄로 간주토록 하고 해독행위 자체는 민사상 위법한 것으로 취급함.
- 집행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경조치 및 형사절차의 적용대상을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지 않아 TRIPS-plus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국경조치의 경우 권리자가 충분한 조건과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권리자의 부담을 강조하고 있음.
-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도 TRIPS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이고 상업적 규모인 위반에 국한하고 있음.
 - 다만 민사절차 적용대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복제방지기술의 파기, 권리표시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관련 물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가 피해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이 FTA는 최종권리자에게 소송비용을 보상토록 하고 있어 TRIPS 협정보다 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나. 싱가포르·일본 FTA

- 이 FTA는 내국민대우를 TRIPS가 규정하는 한도에서만 적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일본의 특허부여절차에 상응하는 정도로 특허부여절차를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아울러 양 계약국은 지식소유권의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함.

- 협력분야는 ① 특허, 영업상의 비밀 및 관련 권리 ② 상표 및 관련 권리 ③ 부정경쟁의 방지 ④ 저작권, 의장 및 관련 권리 ⑤ 지식소유권의 증대 또는 실시 허락, 지식소유권의 관리, 등록·이용 및 특허지도의 작성 ⑥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소유권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의 증대 ⑦ 기술 및 시장정보 ⑧ 지식소유권에 대한 교육 및 개발사업임.
 - 협력형태는 ① 지식소유권과 관련하는 자국내 행사나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② 지식소유권 분야의 전문가 연수 및 교류 ③ 지식소유권 행사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공유임.
 - 협력 강화를 위해 지식소유권에 관한 합동위원회를 설치, 협력활동의 감독 및 개선, 조언,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기타 사항을 토의케 함.
- 양 체결국에 공개되어 있는 지식소유권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위는 TRIPS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각국내에서의 보호방식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강화하는 데 협정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임. 즉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 및 법령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행사, 정보, 인재 교류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음.

다. 베트남·미국 FTA

- 이 FTA는 적극형으로 TRIPS 협정에 포괄되지 않은 기존의 협약, 즉 제네바협약, 베른협약, 파리협약, UPOV 협약 및 위성송신배포협약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추가적인 조항을 상표, 저작권, 특허 등 권리형태별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 상표권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에는 표기되지 않은 단체표장, 서비스표

및 증명표장 등을 명시적 보호대상으로 함.

- 저작권에서는 그 보호기간이 75년으로 연장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TRIPS 조항임.
- 특허의 경우 규제적 허가절차과정에서 야기된 연기에 대해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아울러 위성송신 암호의 해독을 위한 기기의 제작, 변형 및 판매를 범죄로 간주,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구제를 가능토록 함.

□ 집행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경조치 및 형사절차의 적용대상을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지 않아 TRIPS-plus로 보기 어려움.

- 상표위조 및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도 TRIPS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의적이고 상업적 규모인 위반에 국한하고 있음.
- 다만 민사절차 적용대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기술협력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체제 강화를 위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데 합의함.

- 협력활동은 경험 공유와 직원훈련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지식재산법의 입법 및 규제를 위한 틀 강화,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 강화,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 3 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 ASEAN은 지식기반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ASEAN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및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04-2010)에 잘 나타나 있음.
 - 회원국들은 상표출원체계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전문가그룹에 의해 완성된 ASEAN Filing Form for Trademarks 및 Notes for the Completion of the Application은 이에 대한 지역협력의 일면을 반영함.
 - 또한 특허전문가그룹은 조화가 필요한 디자인법 및 절차의 차이점을 검토하며, EU내 EC 디자인체계의 경험뿐 아니라 민간기관들로부터 세부적인 자문을 얻고 있음.
- 아울러 ASEAN은 ASEAN 지식재산협회, 국제상표협회, 공동체 상표·의장청, WIPO 그리고 호주, EU 및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 ASEAN 회원국들은 지식재산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및 정부기관, ASEAN 전문 부서들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아울러 특허사무소를 포함한 ASEAN의 특허체계, 상표사무소를 포함한 ASEAN의 상

표체계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ASEAN 표준과 관행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의 규범 개발을 위해 협의함.

- 이 회원국들은 상호 이익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역내 ASEAN 지식재산협정을 TRIPS 협정 및 관련 협약에 부합토록,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가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사회·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울러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존중함과 동시에, 남용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협력분야로는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비밀정보 및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를 포함하며, 이 활동들은 ASEAN 지식재산의 행정활동 강화, 지식재산의 집행 및 보호부문에서의 협력 촉진, 그리고 ASEAN 특허 및 상표체계의 설립 가능성 모색을 목표로 함.
- 이러한 협력활동들은 회원국들 대표로 구성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그 결과 및 관련 권고는 ASEAN 고위관료회의에 제출됨.
-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회원국들간 견해차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호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ASEAN 고위관료회의, 혹은 최종적으로 경제장관회의에 의해 해결됨.
- 이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체결 또는 체결하게 될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간, 다자간 협정 혹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음.
- 끝으로 각 회원국의 정부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 이 협정의 개정은 회원국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되 이들의 수락에 의해 효력을 발생함. 단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는 이루어지지 않음.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tion Plan 2004-2010)은 지식재산 창출 및 상용화 보조와 범위 확장을 돕고, S&T 부문과 R&D 활동의 국내외 연계 형성을 도모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집행의 틀을 개발, 조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음. 아울러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공인식의 확산 및 인적·제도적 자원 형성을 촉진하고,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사무소에 대해 비즈니스개발서비스(BDS)를 지원 토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활동계획의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ASEAN 역내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 ASEAN은 발명·혁신 및 기술변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S&T 기반과 역량이 편협·제한되어 있고, S&T와 R&D 그리고 ASEAN내 산업들의 실질적 기술수요간 격차가 크며, 지식재산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정보와 연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임.
 - 이에 이 활동계획은 ASEAN내 혁신적·경쟁적 부문 및 산업의 출현, S&T와 R&D 기관들간 연계 및 네트워크 촉진, 기업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기여 극대화를 위한 협력활동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간소화·조화·등록 및 보호를 위한 틀 개발
 - ASEAN을 하나의 혁신적, 경쟁적 지역으로 변형시키는 데에는 지식재산권정책 및 기관들을 축성시키기 위한 틀 마련이 절실하며, 특히 정보추구, 재정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의 건실성 유지·감독이 중요함.
 - 이에 이 활동계획은 ASEAN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약의 가입과 조화에 관한 경험교환, 정책이슈와 함의에 관한 세밀한 고려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공인식 촉진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
 - TRIPS 발효 및 FTA 확산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기관과 인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이 계획은 공공인식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워크숍, 훈련프로그램 및 공공이벤트를 개최하고, 인력과 기관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주제에 관한 정기적 워크숍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정책경험 교환에 주력하고 있음.
- ASEAN 개별국의 지식재산사무소들에 의한 협력적 비즈니스개발서비스(DSB) 활동 향상
 - 다양한 자원과 자격을 갖춘 풍부한 인적자원의 부재로 인해 이 지역 지식재산사무소들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바, 이는 타 회원국들의 경험 학습 및 공유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이 계획은 ASEAN내 모든 지식재산사무소의 필요에 대한 세부적 평가와 함께, ASEAN 데이터뱅크 및 특허기술의 중개체계 형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EC·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peration Program: ECAP)

- EC와 ASEAN은 상호 중요한 무역·투자 상대국임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자신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 프로그램을 추진함.
 - ECAP은 5년간 작업계획(five-year work plans)에 따라 이행되며, 이는 ASEAN 개별국들간 토론과정에서 결정됨.
 - 이 프로그램은 EC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유럽특허사무소 및 공동체 상표·의장청에 의해 이행되고 있음. 공동체 상표·의장청이 무역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활동을 이행하는 반면, 유럽특허사무소는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부문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SEAN 및 EC 전문가들에 의한 활동은 훈련, 강의, 기술지원, 체계개발,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고위급 및 작업반 회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ECAP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옴.

- EC · ASEAN Patents and Trade Marks Program(ECAP I)

- ECAP I은 1993년 9월부터 1997년 6월까지 ASEAN의 공업재산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초기 ASEAN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태국에 의해 이행되었음. EC는 ASEAN으로부터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2000년 7월 ECAP II를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음.

- EC · 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peration Program (ECAP II)

- ECAP II는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영역들, 특히 집행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CAP II에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이 ASEAN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900만 유로 기금으로 2006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임. 이 프로그램 개시 이후 100가지 이상의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
- ECAP II의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과 ASEAN간 무역, 투자 및 기술교환 촉진, 그리고 ASEAN 역내 무역 및 투자 진작에 있음.
- 아울러 ASEAN의 지식재산권법이 적어도 TRIPS의 최소요건과 일치하도록 법적인 틀을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및 집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 얼마나 지식재산권이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나. ASEAN · WIPO 협력

□ ASEAN · WIPO 협력은 1993년 지식재산권 부문 협력과 관련해 WIPO와 ASEAN 제네바위원회간 정규대화를 통한 합의의 메커니즘이 제도화되면서 시작됨.

- 이 포럼은 이들간 협력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향후 협력부문 선정 을 통해 협력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하는 데 중대한 추진력이 되었음.

-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04년 11월 15일 WIPO·ASEAN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력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역량 루어와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이들간 협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이 발견됨.
- 실제로 WIPO는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접근법, 디지털환경과 새로운 글로벌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해 이 지역 정책결정자 및 지적재산사무소 수장과 정책대화에 참여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ASEAN작업반(WGIPC)이 하부지역수준에서 중요한 제도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제 4 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 지금까지는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을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본 장에서는 한국상품, 특히 문화상품에 대한 이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설명해봄.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들의 불법판 비율을 보면, 인도네시아 92%, 필리핀 89%, 태국 60%, 말레이시아 50%임.⁴⁾
- 특히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이들의 저작권 침해는 최근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상품인지도 상승과 함께 유·무형으로 심화되고 있음.
- 박재복 MBC 프로덕션 국제사업부장(2005)에 따르면, 한국 방송콘텐츠의 불법 저작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유명업체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4) 아시아 각국의 불법판 비율

(단위: %)

국 가	비 율
인도네시아	92
필리핀	89
태 국	60
인 도	60
말레이시아	50
대 만	44
홍 콩	20

자료: 김혜준(2005), p. 5에서 재인용.

- 미얀마에서는 드라마 ‘대장금’이 계약협의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CATV 채널에서 방영이 광고됨에 따라 그 공급경로를 확인 중임.
- 캄보디아에서는 2005년 4월 드라마 ‘의가형제’가 불법방영됨에 따라 항의 서한이 발송, 방영이 중지된 바 있음.
- 필리핀에서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불법 DVD가 국내 방송 종료 직후 바로 유포됨에 따라, 복제배포전권을 구매한 Telesuccess가 복제배포권을 포기하는 등 정식 DVD 발매사업에 큰 손해가 예상되고 있음.
- 태국에서는 중국어 버전의 불법복제품 유입으로 인해 한국드라마 정품 DVD 출시가 활발하지 못하고 가격도 낮은 상태임.

□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불법복제는 KOTRA 해외무역관의 현장실사 보고서 (2005)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4-1 참고).

- 싱가포르에서는 DVD와 VCR의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반면, 음반 등 기타 분야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DVD의 경우 20~30미국달러의 정품이 5~8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로 유통되며, VCR은 3개가 5미국달러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음.
 - 이 불법복제품들은 주로 말레이시아를 통해 유입되며 중국으로부터 직접 반입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시내 중심의 중대형 매장보다는 시내 외곽, 노점좌판상 혹은 주점 등지에서 보따리행상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영화, 음반, 게임 및 책자·서적 등에 걸쳐 불법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영화와 음반 불법복제품은 대략 1.4~2.3미국달러에 팔리고 있으며,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거래되기도 함. 또한 한국서 제작된 배한사전이 불법복제되어 40미국달러에 달하는 정품이 7.6미국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중국산 복제품이 음반 및 비디오숍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웹상에서 거래되기도 함.

표 4-1. 한국 문화상품의 피해사례

국가	구분	제 목	업체명	침해내용	침해 유형	유통구조
싱가포르	DVD	na	na	20~30미국달러의 정품이 5~8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로 유통됨.	저작권 침해	시내 외곽지역에서 보따리행상 형태로 유통됨.
	VCR	na	na	3개에 5미국달러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음. 대만 등지에서 Subtitle을 삽입하거나 디빙작업한 한국산 드라마 전질 30개 세트의 경우 25~30미국달러에 유통됨.	저작권 침해	시내 외곽지역에서 보따리행상 형태로 유통됨.
베트남	영화	서울에서의 72시간	Fafilm Vietnam - Hochiminh Branch	20미국달러의 정품이 1.4 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로 거래됨.	저작권 침해	중국에서 불법 복제되어 대형 도소매업자 비디오숍에 유통됨.
	음반	베이비복스	na	20미국달러의 정품이 2.3 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로 거래됨.	저작권 침해	중국에서 불법 복제되어 대소형 도매업자, 음반숍에 유통됨.
	게임	리니지TM 리니지2 (온라인게임)	엔씨소프트	월회비 15미국달러의 정품이 공짜로 유통됨.	저작권 침해	베트남 소프트웨어 회사
	책자·서적	배한사전	한국외국어대 출판사 조재현 교수	40미국달러의 정품이 7.6 미국달러의 불법복제품으로 거래됨.	저작권 침해	출판사 도매업체 서점소비자
인도네시아	DVD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비무장지대 등 DVD 다수	na	불법복제 DVD를 초저가로 판매 - 하드케이스의 경우 0.78 미국달러 소프트웨어의 경우 9.67미국달러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유통소매장에 직판, 싱가포르 비디오숍에서 거래됨.
	VCD (영화, TV, 드라마)	권상우, 장동건, 송해교, 배용준 출연 영화 및 TV드라마	na	불법복제 VCD를 초저가로 판매 - 비디오대여점 판매가: 0.33미국달러/개 비디오대여점 소비자대여가: 0.11미국달러/개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비디오대여점에 직판
	CD (음반)	현구 여가수 혹은 남가수 노래모음집	na	불법복제 음반 CD를 초저가로 판매 1.11 미국달러/개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음반판매점에 직판

표 4-1. 계속

국가	구분	제 목	업체명	침해내용	침해 유형	유통구조
말레이시아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 한국영화 전반	강제규 필름	불법복제 DVD가 2.1~3.4 미국달러에 거래.	저작권 침해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 제조 후 시내 쇼핑센터나 노점상가에 판매.
	애니메이션	마리아이야기	씨즈엔터 테 인먼트	상기 영화 DVD 불법복제 유통과 동일함.	저작권 침해	현지에서 불법 복제된 CD, DVD로 유통됨.
	방송	겨울연가	KBS2	상기 영화 DVD 불법복제 유통과 동일함.	저작권 침해	정품 VCD, DVD도 판매되고 있으나, 해적 판 유통이 압도적임.

주: na는 자료 입수가 불가능함을 의미함.
 자료: KOTRA(2005) 정리.

-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수의 영화와 TV 드라마가 DVD 및 VCD 형태로 불법복제되고 있음.
 - o 불법복제 DVD의 경우 0.78~9.67미국달러, VCD의 경우 0.33미국달러, CD의 경우 1.11미국달러의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음.
 - o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정품을 불법복제한 후 유통 소매장 혹은 비디오숍과 음반판매점에 직판하고 있음. 아울러 불법복제품을 중국에서 구입,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량으로 재복제하여 초저가에 판매·대여하기도 함.
 - 말레이시아는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DVD, VCR 복제품이 성행하고 있음. 한편 한국가수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가요음반을 복제·유통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o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은 현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자가 불법제조 후 시내 쇼핑센터나 노점상가에 판매하고 있음.
- 이처럼 ASEAN 회원국들에 의한 한국 문화상품의 피해는 저작권 침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단속만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수준

에 도달해 있음.

- 이는 곧 한국 문화상품의 잠재적 수출에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기술경쟁력 비교

- 상기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ASEAN 회원국들의 저작권 침해는 이들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상의 미비점 외에도 한국과의 기술경쟁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우선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 회원국들에 비해 보다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이는 현 한국 기술경쟁력이 이 회원국들에 비해 우월함을 의미함.
 -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⁵⁾에 기반한 홍유수 외(2003) 분석을 살펴보면, 한국(44.4%)과 싱가포르(68.8%)는 중·고급기술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태국(65.4%), 필리핀(64.6%) 및 인도네시아(71.8%)는 여전히 중·저급기술산업에 치우쳐 있음(표 4-2 참고).

5) OECD의 기술수준별 산업분류는 고급기술산업, 중고급기술산업, 중저급기술산업 및 저급기술산업으로 구분됨. 고급기술산업에는 항공기 및 우주선, 제약, 사무·회계 및 컴퓨터기기, 의료·정밀·광학기구가, 중고급기술산업에는 전기기계 및 장치, 자동차·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제약을 제외한 화학품, 철로기기 및 운송기기, 기계 및 기기, 중저급기술산업에는 코크스·정제된 석유제품 및 핵연료,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선박제조 및 수리, 기계와 기기를 제외한 가공된 금속제품이, 그리고 저급기술산업에는 제조업 및 재 활용품, 목재·펄프·종이·종이제품·인쇄 및 출판, 음식·음료 및 담배, 섬유·섬유제품·가죽 및 신발이 해당됨.

표 4-2. 국별 최근연도 기술기준 산업별 생산액 비교

(단위: 억 달러, %)

	일본 (2000)	한국 (1999)	중국 (2001)	싱가포르 (2000)	말레이시아 (1999)	태국 (2000)	필리핀 (1998)	인도네시아 (2000)
고급기술산업	5,653 (13.7)	797 (13.8)	8,088 (9.9)	561 (46.3)	392 (41.2)	114 (10.2)	75 (18.7)	67 (5.8)
중고급기술산업	14,215 (34.3)	1,769 (30.6)	20,123 (24.6)	273 (22.5)	160 (16.9)	272 (24.3)	67 (16.7)	261 (22.4)
중저급기술산업	9,028 (21.8)	1,601 (27.7)	27,625 (33.8)	175 (22.7)	165 (17.4)	215 (19.2)	98 (24.4)	165 (14.2)
저급기술산업	12,506 (30.2)	1,618 (28.0)	25,813 (31.6)	103 (8.5)	233 (24.5)	517 (46.2)	161 (40.2)	670 (57.6)

주: () 안은 제조업 중 해당 기술산업의 비중임.

동아시아 6개국의 최근연도 자료를 사용함. 단, 중국의 생산액 단위는 억 위안, %임.

자료: 홍유수 외(2003), p. 37.

- 아울러 기술경쟁력 관련 지표인 핵심역량을 고려해보더라도, 한국은 ASEAN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핵심역량을 소지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잠재적인 기술경쟁력 또한 이들 회원국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함.
 - 아울러 혁신체제 4대 핵심역량 기준, 즉 인적자원, IT 인프라, R&D 역량 및 경영환경을 살펴보면, 한국은 12개 항목 중 7개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ASEAN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기술경쟁력을 소지하고 있음(표 4-3 참고).
 - 인구 1천 명당 연구인력(0.65)의 경우, 한국은 비록 OECD 평균에는 미달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에 비해 그 수치가 높음.
 -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인터넷 이용률(1.32) 및 정보통신투자(1.56)가 OECD 평균을 상회, 회원국들의 수치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한국은 R&D 역량 측면, 특히 GDP 대비 R&D 비율(1.28) 및 기업 R&D 비율(1.15)이 OECD 평균을 상회, 여타 회원국의 것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비록 특허신청건수가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

하나,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 평가 측면에서는 OECD 평균에 미달, 여타 회원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저조함.

표 4-3. 국별 핵심역량의 비교(OECD 기준)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OECD 평균
인적 자본	공공교육지출	0.82	0.21	0.01	0.17	0.09	0.03	0.01	1
	3차 취학률 (고등교육 취학률)	0.78	1.14	0.11	...	0.73	0.20	0.46	0.58	0.20	1
	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1.56	0.65	0.14	1.18	1.03	0.09	0.07	0.06	0.36	1
IT 인프라	인터넷 이용률 (인구 천 명당)	1.00	1.32	0.08	0.90	1.13	0.64	0.15	0.06	0.04	1
	정보통신투자 (GDP 대비 비율)	0.93	1.58	2.96	0.93	1.38	1.70	0.06	1.23	0.09	1
	국제전화요금 효율성	0.32	0.34	0.10	0.38	0.55	0.26	0.24	0.30	0.28	1
R&D 역량	R&D/GDP	1.48	1.28	0.42	1.01	0.93	0.21	0.09	0.04	0.05	1
	기업 RND/총 GDP	1.12	1.15	0.95	1.05	1.05	1.01	0.54	0.67	...	1
	특허신청건수	2.55	0.89	0.65	...	0.36	...	0.03	0.04	0.32	1
경영 환경	세후수익비율	...	1.10	1.38	...	1.09	0.95	2.05	0.93	0.61	1
	지식재산보호평가	0.97	0.70	0.58	0.87	1.01	0.7	0.67	0.62	0.54	1
	무역/GDP	0.28	1.18	0.61	1.19	4.45	3.08	1.56	1.50	1.07	1

주: 각 항목의 지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1로 기준한 비율임.

자료: 홍유수 외(2003), p. 80.

- 한편 싱가포르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의 핵심역량 수준은 거의 모든 범주에 있어 한국 및 OECD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승인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특허출원 및 승인 건수가 회원국들의 경우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4-4 참고).
 - ASEAN 회원국의 경우 특허출원수가 다소 적은 것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약 10%에 그치고 있음. 반면 한국의 경우 거주민에 의한 특허, 상표권 및 산업의장 출원비율은 약 70~98%로, 이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편임.
- 전반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의 기술경쟁력 및 핵심역량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향후에도 상존할 것으로 보임.

표 4-4. 지식재산권 출원 및 승인 현황

	특 허		상표권		산업의장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남아시아						
캄보디아						
거주민	na	na	304	220	na	na
비거주민	na	na	1,749	1,370	na	na
인도네시아						
거주민	370	18				
비거주민	3,770	1,056	41,152	na	1,403	na
라오스						
거주민	na	na	25	26	na	na
비거주민	na	na	676	721	na	na

표 4-4. 계속

	특 허		상표권		산업의장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출 원	승 인
말레이시아						
거주민	206	24	6,303	449	84	75
비거주민	6,021	381	12,500	1,328	120	113
필리핀						
거주민	135	10	5,201	298	479	506
비거주민	2,470	1,082	4,703	2,803	340	273
싱가포르						
거주민	523	170	5,187	1,970	na	na
비거주민	7,610	7,050	17,062	13,052	na	na
태국						
거주민	561	45	15,495	7,686	1,939	119
비거주민	4,488	371	11,560	6,531	758	209
베트남						
거주민	34	12	3,483	1,423	1,110	515
거주민	260	218	2,335	1,455	97	111
기타 국가						
호 주						
거주민	8,248	588	41,973	15,337	2,674	1,872
비거주민	5,676	3,775	29,523	13,165	1,581	1,236
중 국						
거주민	29,962	5,388	181,727	129,441	56,460	39,865
비거주민	33,254	10,909	24,623	16,327	4,187	3,731
일 본						
거주민	386,767	109,375	104,655	78,322	37,176	30,617
비거주민	52,408	12,367	19,100	12,864	2,247	2,263
한 국						
거주민	73,714	21,833	86,408	26,872	35,074	17,373
비거주민	30,898	12,842	20,729	6,811	1,793	1,277
미 국						
거주민	161,786	83,999	251,220	95,448	11,536	11,285
비거주민	109,261	61,189	41,244	14,096	6,756	61,129

주: () 안의 숫자는 1인당 GDP를 의미함.

자료: Wattananprutipaisan(2004), p. 7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ASEAN 및 회원국들은 매우 상이한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
 - 개별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의 국제협약 가입 현황 및 TRIPS 이행형태가 다양하며, FTA 체결 현황 및 성격도 체결국에 따라 다름.
 - ASEAN 자체로서 볼 때, 동일한 표준을 채택한다든지 지식재산권의 동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 위주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상기 제도 및 정책들에서 보듯이,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들에 비해 약할 뿐 아니라, 기술경쟁력도 열세한 편임.
 - 최근 이 지역에서는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이전에 비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한국상품 피해사례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상품 전반에서 볼 때 그 실제적인 피해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양 지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열풍 강화, 그리고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한국상품의 수출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ASEAN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우선 ASEAN 회원국간의 제도적 차이점을 감안하여,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은 TRIPS 협정의 보호수위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함. 만약 이 협정이 TRIPS-plus의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실질적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한편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양한 형태(예: 인터넷상의 오락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침해되고 있는바, 이처럼

TRIPS 체결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협정에 조항화할 것인지에 대해 차후 양자간 논의가 필요함.

- 한 예로 저작권 침해를 싱가포르·미국 FTA의 보호조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협력을 통한 규제방식을 채택한 후 차후 협정에 삽입,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한국제품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 성행은 근본적으로 이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곧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큰 유인이 없음을 의미함. 따라서 무작정 규제,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협력분야를 발굴, 활성화함으로써 그 유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ASEAN 회원국 중 가장 선진화된 제도와 기술력을 겸비한 싱가포르를 포섭, 이들의 경험 및 협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산업들을 선정해 양 지역간 민간차원의 조사를 실시,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음.
 - 한편 침해 정도가 심하거나 복잡한 경우, 2002년과 2003년 태국이 미국과 함께 실시한 바 있는 공동수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ASEAN 회원국들의 경우 법정 소송비용이 크고 소요시간도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법정 소송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함.
- 아울러 기술 및 시장정보(정보제공시스템 포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발 사업부문에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공동연구 및 합작, 전문가 연수 및 교류 형태로 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공학 등에서의 협력을 강구해볼 수 있음.
 - 아울러 이 지역에서 침해되고 있는 한국상품이 주로 저작권분야인데다,

한류현상도 감안할 때 영화나 드라마의 공동제작을 강화하는 등 문화상품에서의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러한 협력활동의 감독 및 조인을 위해 ‘합동위원회’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표준의 조화 혹은 통일보다는 협력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TRIPS의 근본취지인 불법복제품의 국제유통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해준. 2005. 『한류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영화분야 재산권 침해 사례』. 2005년 10월 25일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안 및 대응” 전경련 세미나 발표자료.
- 박재복. 2005.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 2005년 10월 25일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안 및 대응” 전경련 세미나 발표자료.
- 윤미경·정성춘·엄부영. 2004. 『한·일 FTA 지적재산권 조항: 일본측 초안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수시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근. 2003. 『지적재산권』.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5. 『한류 국가의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 홍유수 외. 20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자료]

- ASEAN. IPR-related materials. Available at: <http://www.aseansec.org>.
- Crawford, Jo-Ann and Roberto V. Fioretino. 2005.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No. 8. WTO.
- EIU. 2005. “Licens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ountry Briefings.
- KIEP. 2004. Korea-ASEAN Joint Studies Materials.
-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2004. *Legal Action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Asia*.(in Korean)
- Wattananpruttipaisan, Thitapha. 200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nterprise Development: Some Policy Issues and Options in ASEAN.” *Asia-Pacofoc Development Journal*, Vol. 11, No. 1, pp. 73~89.
- WTO. Several years. *Trade Policy Review*.

Executive Summary

IPRs of ASEAN and Its Member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ASEAN FTA

Booyoung Eom

Korea and ASEAN, aiming to conclude an FTA in 2006, began the first round of negotiations on February 22 to 25 and concluded the seventh round as of October 11 to 14 in 2005. It is agreed that IPR is one of the remaining issues in negotia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entities.

Under worries that any positive effects of an FTA will be negated in the event of inadequate IPR prote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PR policies of ASEAN and its members, and draws implications for a Korea-ASEAN FTA.

ASEAN and its members have different systems and policies regarding IPR protection. At the country level, it varies by membership to international treaties, the implementation of TRIPS, and diverse FTAs and their characteristics. At the ASEAN level, policy is characterized by cooperation-centered provisions, rather than by a single standard or harmonization.

Recently, copyright infringement on Korea's cultural products has become prominent in the Southeast region, primarily due to that region's technological disadvantage in relation to Korea. This problem has the potential to become more serious in the near future with the activation of cultural exchanges, Hanryu Yulpoong and an increase in Korean exports to the reg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a Korea-ASEAN FTA. Accordingly, we need to utilize this opportunity to include IPR

provisions in the agreement itself.

Here, bearing a Korea-ASEAN FTA in mind,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o begin with, considering institutional differences among ASEAN members, IPR provisions should not be more stringent than TRIPS. Moreover, because most ASEAN members are technologically disadvantaged, they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protect Korean IPR.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reate and heighten incentives by exploring and facilitating areas of cooperation, rather than by haphazardly implementing regulations. More specifically, Korea and ASEAN member countries should cooperate by selecting industries in which IPR has been seriously infringed and undertake private investigations on them, exchanging information and preparing for countermeasures at need. In addition, mutual cooperation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lawsuits. Furthermore, cooperation could proceed in the form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experience sharing in technology and markets, in mutual studies and joint ventures, and in the training and exchange of experts. In particular, they should collaborate in bioengineering, utilizing the abundant regional biodiversity, and cultural products, by strengthening mutual film and drama productions.

In conclusion, IPR negotiations of the Korea-ASEAN FTA should be focused on cooperation rather than on the harmonization or unification of standards, and, in the long run, on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s of illegal reproduction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RIPS.

KIEP 발간자료목록 (2004 ~2005. 12)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찬 외
- 04-02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 김원호·권기수·김진오
- 04-03 ASEAN + 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 04-04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폴란드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 김홍중·김균태
-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 강준구·박지현
- 04-07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김정곤·박혜리
- 04-08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박지현
-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강준구
-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 엄부영·강정실
- 04-11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울·홍수연
-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홍중·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 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 송영관
-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김우영·박순찬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정책연구

-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 김원호 외
-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남영숙 외
-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방호경 외
-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최낙균
-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윤창인
-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이창수
-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윤미경·윤창인·이상승
-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양두용 외
-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김홍중 외
-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정인교 외
-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강문성
-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이홍배 외
-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지만수 외
-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홍익표 외
-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선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안형도·오용협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전일수·홍석진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이상학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이형근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삼열 외
-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홍중·이창수·김근태·강준구·박순찬
- 05-10 APEC 보고로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삼경·박성훈·박순찬·박인원
-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종규

-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울·왕윤종·오쿠다 사토루·정재완
-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정승호·윤정혁·이상민
-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동용승·홍익표·이재영·이종운·정형곤
-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임혜준 편
-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김종혁

■ 지역연구

-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박복영
-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김홍중·이철원·김병연

■ Policy Analyses

-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 05-03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 정책 토론회시리즈

-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홍수연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 세미나자료모음

-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홍종·박성훈·페터 가이 편

■ APEC Study Series

-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Seok-young Choi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 OECD Study Series

-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 -Yull Choi

■ Discussion Papers

-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04-02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Tae Hwan Yoo

- 04-03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 Young- Sun Lee and Deok Ryong Yoon
-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 Working Papers

-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 04-04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 04-05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 04-06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 04-07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 Wanjoong Kim and Terrence Kinal
- 04-0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sumption Risk Sharing / Yonghyup Oh
- 04-09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 Jong-Woon Lee
- 04-10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 Chae- 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 04-11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FTA Partners / Chan-Hyun Sohn and Hyun-Hoon Lee
- 04-1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ast Asia / Soon-Chan Park, Hongshik Lee, and Mikyung Yun
- 04-13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 Sung Jin Kang and Hongshik Lee
- 04-14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Zhaoyong Zhang
-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 Zhaoyong ZHANG
-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 Richard E. Baldwin
-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 Kiyotaka Sato
-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Lee-in Chen Chiu
-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 Yin-Wong Cheung
-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CHEN Hong
-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çoise NICOLAS
-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 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 05-06 中國 東北3省 進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 임 명
-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지역리포트

-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박영호
-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
-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박영호
-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박영곤
-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 김홍중·김군태
-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권경덕·김은지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홍중·김군태·Bernhard Seliger
-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 지역연구회시리즈

-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김은경·김홍중
-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김홍중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윤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쓰히로
-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 유장희·김은미

■ 단행본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이철원·정후영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 이경태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최낙균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강준구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김관호·원신희

-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이성봉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이경태 편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조명철 편
-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 최낙균·윤창인·송유철·이성봉·김준동·양준석·이종화·손찬현·강문성·박순찬·윤미경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rean Crisis and Recovery / 김세직·David T. Coe eds.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KOPEC·KIEP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안충영 편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안충영 편
-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 김원호 편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2003/04 북한경제백서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중·손병해 공편저

엄부영(嚴富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피츠버그대 국제관계학 석사

스위스 제네바대(IUHEI) 국제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byum@kiep.go.kr)

著書 및 論文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2004) 외

정책자료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주) 천 세 전화: 2272-2727 대표 김양기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2091-3 94320
89-322-2068-9(세트)

정가 2,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전문가폴 토의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IPRs of ASEAN and Its Member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ASEAN FTA

Booyoung Eom

ASEAN 및 회원국들은 국제조약 가입, TRIPS 이행, FTA 체결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매우 상이한 제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권 조항은 TRIPS의 보호수위보다 높지 않게 책정하되, 무각정 규제·단속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공학, 영화나 드라마의 공동제작 등 협력분야를 발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ASEAN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표준의 조화 혹은 통일보다는 협력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TRIPS의 근본취지인 불법복제품의 국제유통을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20918 94320
ISBN 89-322-2091-3
ISBN 89-322-2068-9(세트)

정가 2,000원